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5월 4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7년 5월 8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5월 15일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권 순 서

나. 제안이유

-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른 맞춤형 복지담당 신설 및 사회 복지 인력을 증원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 「제101회 전국체전」의 준비와 예산확보, 행사기획, 시설확충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 및 한시정원을 증원하며
- 2017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수요정책 추진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가. 1,642명 → 1,650명(+8명)

- 집행기관 : 1,614명 → 1,622명(+8명)

- 의회사무기구 : 28명(변동없음)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 3)

가. 정원 총계 : 1,642명 → 1,650명(+8명)

- 사회복지 인력 확충 : +4명
- 지역공동체 전담인력 확충 : +1명
- 인구정책 전담인력 확충 : +1명
- 전국체전 추진인력 확충 : +2명

나. 일반직 계 : 1,603명 → 1,612명(+9명)

- 5급 : +2명
- 6급이하 : +7명

다. 연구직 계 : 4명 → 3명(△1명)

- 한시 정원표 (안 별표 4)

가. 정원 총계 : 3명

나. 일반직 계 : 3명

- 5급 : 1명
- 6급이하 : 2명

다. 존속기한 : 2020년 5월 31일까지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 정원 순증에 따른 연간추계 소요인건비 : 3,468,131천원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근 도

○ 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면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인력을 증원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전국체전추진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제101회 전국체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추진하고 2017년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수요정책 추진 필수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